◈ 『정토학연구』 논문 투고규정

한국정토학회 회칙 제22조 4항에 의거하여 논문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내부규정을 둔다.

- 1. 정규 발행 학회지 원고 제출 마감일은 학회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이전(60일)으로 한다. (6월 발간은 4월까지, 12월 발간은 10월까지 마감)
- 2. 투고 요령 및 규정
 - 1) 논문은 반드시 아래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.
 - 2) 제출된 본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최저 120매에서 최대 150매를 기준으로 한다.
 - 3) 학회 E-mail로 투고한다.
 - 4) 제목 및 투고자의 이름, 직함은 영문을 병기한다.
 - 5) 공동집필의 경우 제1집필자와 공동집필자의 구분을 명시한다.
 - 6) 투고자는 <『정토학연구』게재 심사 신청서>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.
 - 7) 제출된 논문은 반드시 ① 영문초록(500단어 이내), ② 키워드(10개 이내), ③ 한글요약 (원고지 4매 이내), ④ 주제어(10개 이내), ⑤ 참고문헌 등을 수록해야 한다.
 - 8) 투고한 원고는 『淨土學硏究』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- 3. 접수처 : 한국정토학회 사무실

(06653)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6 현대전원오피스텔 201호

전화: 02-581-3137,8 E-mail; jungtohak@naver.com

- 4. 작성 시 주의사항
 - ※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 - 1) 본문
 - 가. 편집의 일관성을 위하여 논문의 장, 절, 항, 목의 구분은 I-1-1)-(1)- ①로 표시하다.

글씨체 : 신명조 / 글자크기 : 11포인트 / 줄간격 : 160

- 나. 한글 표준어를 사용하되 원어와 고유어를 첫번째에 한하여 괄호() 속에 병기한다. 원어와 고유어의 사용은 외국어, 외래어, 전문 용어, 인명, 지명, 서명, 작품명 등으로 한다.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한 논문에서는 되도록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.
 - 예) 십념왕생원(十念往生願), 무량광(無量光, amitābha),
- 다. 원어번역의 경우 직역일 때는 괄호() 속에, 풀이하는 말은 원어를 대괄호 [] 속에 표기하다.
 - 예) 무량수(無量壽, amitāyus), 아미타불[無量壽佛]
- 라. 성명(姓名)은 붙여 쓰고, 자(字)와 호(號) 등은 성명 앞에 쓰며, 생몰연대는 성명 다음의 괄호 안에 표기한다.

예) 한국인명: 김유신(金庾信, 595-673), 청허 휴정(淸虛休靜, 1520-1604)

일본인명: 나까무라 하지메(中村元)

서양인명: 리스 데이비즈(T. W. Rhys Davids)

인도인명: 다르마라크샤(Dharmaraksa, 法護)

- 마. 같은 계통의 단어를 나열할 때는 쉼표(,)를 사용하고, 동일한 범주의 같은 성격을 지닌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낱말은 그 사이에 가운뎃점(·)을 사용한다.
 - 예) 예배문(禮拜門), 찬탄문(讚歎門), 작원문(作願門), 관찰문(觀察門), 회향문(廻向門)안・이・비・설・신・의
- 바. 품(品), 편(篇), 논문명은 낫표(「」)로, 잡지 및 신문 명은 (< >)로 표기한다.
- 사. 저서 제목은 동양어권 저서명의 경우 겹낫표(『 』)로, 서양어권 저서명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.(주석부분과 예가 겹치므로 지움)
- 아. 강조는 홑따옴표('')로 표기한다.
- 자. 표와 그림은 <표 1>, <그림 1>과 같은 형식으로 일련번호를 지정하여 표는 윗부분에 그림은 아랫부분에 표기한다. 단, 출처를 밝히고자 할 때에는 하단에 "(출처:○○○○)"라고 표기한다.
- 2) 인용문 : 본문보다 글자의 크기를 작게 하고 문단의 앞이 두자 정도 들어가게 하며 인용절 위와 아래의 한 줄씩을 띈다. 글자크기 : 10포인트 / 줄간격 : 150
- 가. 직접인용일 경우는 3행 이내로 따옴표("")로 문장 안에 기술한다. 3행 이상일 때는 따옴표를 쓰지 않고 별도로 문단을 나누어 인용문임을 밝히는데, 좌우로 들여쓰기를 한다. 인용문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는 작은 따옴표('')로 표시한다.
- 나. 원전(原典)을 인용할 때에도 이를 따르되 가급적 한글로 풀이하여 싣도록 하고 그 원 문은 각주에 따옴표("")로 표기한다.
- 다. 시나 게송을 인용할 때 3, 4행 정도는 문장 안에서 다루고, 그이상은 독립된 문단으로 나누어 좌우로 들여쓰기를 한다.(기타 내용 생략)
- 라. 인용문의 처음과 끝 부분을 줄이거나 생략할 때에는 3점 줄임표(···)로, 중략의 경우는 '··· 중략 ···'으로 표기한다.
- 마. 인용하는 원문에 오기, 혹은 오류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교정하여 모난 묶음표([]) 로 표기하고 각주에 오기, 혹은 오류의 원문을 밝힌다.
- 3) 각주 : 1), 2) 등으로 표시한다. 글자크기 : 9포인트 / 줄간격 : 130
- 가. 바로 앞주의 인용 저술이나 논문을 재인용할 경우 '위의 책', 혹은 '위의 논문'으로, 이전에 이미 인용한 저술이나 논문을 재인용할 경우에는 '앞의 책', 또는 '앞의 논문'으로 통일한다.
- 나. 동양어권 논문은 낫표(「」), 저서 및 학술지는 겹낫표(『』), 신문 등은 < >로 표기한다.
- 다. 쪽수 표기는 모두 영문자 'p.'로 통일하여 표기하며 두 쪽 이상의 표기에는 숫자 사이에 '- '를 넣고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.(pp.1-2. 문장의 경우에도 마침표 표기)
 - ① 문헌 인용의 경우
 - <동양어권> 저자, 『저서명』, 출판사, 발행년도, 페이지.
 - 예) 한보광, 『정토삼부경』, 여래장, 2000, pp.13-25.
 - <서양어권> 저자, 저서명, 출판사, 발행년도, 페이지.

- ※ 서양어권 논문의 경우 "", 단행본 및 잡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.
- 예) Foard, James Harlan. *The Pure Land Tradition: History and Development*, Jain Publishing, 2006, pp.110-115.
- ② 논문 제목 및 品・篇 등은,

<동양어권>

예) 강동균, 『정토사상에서의 본원사상』, 『정토학연구』 10, 한국정토학회, 2007, pp.55-59.

<서양어권>

- 에) David W. Chappell, "The Teachings of the Fourth Ch'an Patriarch Tao-hsin(580-651)", *Early Ch'an In China And Tibet*, Asian Humanisties Press, 1983, p.89.
- ③ 대장경이나 한국불교전서 등 원전에서의 인용. 전등록의 내용을 신수대장경에서 인용할 경우, 예)『傳燈錄』(大正藏45, 247하), "인용 내용"
- 4) 참고문헌
- 가. 참고문헌에서는 출판사명은 괄호를 하지 않는다.
- 나. 외국인 저자의 경우 last name(성)을 쓰고 쉼표 후 한 칸 띄어 first name(이름)을 쓴다. 한국인의 경우 성과 이름을 붙여 쓴다.
- 다. 순서
- ① 원전자료, 사전류, 저서, 논문, 신문기사, 홈페이지 순서로 수록한다.
- ② 국한문의 문헌을 먼저 수록하고 그 다음에 구미문헌을 수록한다.
- ③ 국한문의 문헌은 성명의 "가나다"순으로 하고, 구미문헌은 "알파벳"순으로 한다.
- ④ 한 필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출판연도 순으로 한다.
- ⑤ 한 필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처음에 나오는 문헌에만 필자를 쓰고 두 번째 문헌부터는 필자명을 밑줄만 같은 길이로 쓴다. 그러나 앞에 나온 필자가 공저인 경우에는 필자명을 써야 한다.
- ⑥ 한 문헌의 길이가 두 줄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필자의 이름이 끝나는 곳부터 다음 줄이 시작되도록 한다.
- 5) 기타 사항
- 가. 모든 한문은 가급적 본문에서 우리말로 번역하여 인용하고 각주에서 출처를 표기한다. 나.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요령에 따른다.
- 5. 논문 구성 및 체제

논문 제목

집필자 성명 및 소속(공동집필의 경우 제1집필자와 구분명시)

목차

한글요약과 주제어

<u>.</u> 본문

참고문헌

영문초록(Abstract)과 및 키워드

- 6.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투고자 뿐 아니라 본 학회에도 있음을 알려드리며, 게재된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와 한국연구재단 KCI, 기타 온라인상에서 무상 혹은 유상으로 서비스 된다.
- 7. 한국연구재단과 학교를 포함한 연구소 등 소속 기관 및 조계종의 지원 논문은 30만원의 게재료를 납입해야하며, 이 경우 논문 첫 페이지의 사사표기를 원칙으로 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04년 12월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08년 3월 2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